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12. 7 선고 2022나146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 12. 7 선고 2022나14656 판결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11. 10 선고 2021가합171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담당변호사 김민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민기

피고, 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담당변호사 김진욱, 백준호

변론종결 2023. 10. 12.

판결선고 2023. 12. 7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11. 10. 선고 2021가합1717 판결

주문

1.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,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. 12. 2.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1,896,624,7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학교법인 E이 2023. 6. 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7호로 공탁한 4,749,739,726원 중 1,896,624,70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(소관: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)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2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주문과 같다[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금액을 '1,616,900,427원' 에서 각 '1,896,624,701원'으로 확장하였고, 원상회복청구(채권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 청구)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]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,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○ 제1심 판결이유 제1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'마.항'을 추가한다.

「마. E의 공탁

E은 2023. 6. 26.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원인사실을 'O은 2022. 11. 23.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중 52,897,115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(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타채20998). 이에 따라 E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함. 이때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 부분은 성질상 집행공탁이고, 나머지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봄'이라고 기재한 후, 피고의 E에 대한 위 공탁 시점 기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른 원리금 합계액 6,267,616,437원에서 피고가 2023. 5. 15. E으로부터 기회수한 500,000,000원과 O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1) 으로 취소가 확정된 1,017,876,711원을 제외한 4,749,739,726원2) 을 공탁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공탁'이라 한다).」

○ 제1심 판결문 6면 6, 10행, 7면 4행의 각 “1,616,900,427원”을 “1,896,624,701원”으로 각각 고치고, 7면 각주 1)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「1) 원리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.

원리금 합계 1,896,624,701원 = 원금 1,073,600,000원 +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823,024,701원(이자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)

① 166,775,671원 = 1,073,600,000원×[945일(=2016. 2. 11.~2018. 9. 12.)]×6%÷365일②

115,154,630원 = 1,073,600,000원×[261일(=2018. 9. 13.~2019. 5. 31.)]×15%÷365일③

541,094,400원 = 1,073,600,000원×[1533일(=2019. 6. 1.~2023. 8. 11.)]×12%÷365일○

제1심 판결이유 제3의 라.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「라.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

1) 당심 변론종결일 전인 2023. 8. 11.을 기준3) 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

1,896,624,70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와 C 사이에 2016. 12. 2.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6년 제5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체결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위 피보전채권액인 1,896,624,70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

2)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공탁한 경우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변제의 효과가 생겨 제3채무자가 면책되기는 하지만,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,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(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E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 중 4,749,739,726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C에게 E이 2023. 6. 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15617호로 공탁한 4,749,739,726원 중 1,896,624,70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, 대한민국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.」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,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제1심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).

재판장 판사 김종기, 판사 박이랑, 판사 이병탁

1)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가합11837, 부산고등법원 (창원)2020나12601, 대법원 2021다258265(2021.10. 28. 확정)

2) 4,749,739,726원 = 6,267,616,437원 - 500,000,000원 - 1,017,876,711원

3) 원고는 2023. 8. 11.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있다(2023. 8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).